

독일 연방 동물보호법(Bundestierschutzgesetz)의 운용현황 및 처벌수위

정보신청기관 : 농림수산부

I. 독일 동물보호법의 연혁 및 개관

1. 연혁

독일에서 윤리적 동물보호 관점으로 제정된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국가사회주의 시절이었던 1933년 11월 24일에 제정된 제국동물보호법(Reichstierschutzgesetz)(RGBI I S 987)이며, 이는 독일 헌법의 형벌구성요건으로도 받아들여졌다. 이 법률의 제정 이전에도 1871년의 제국형법전(Reichsstrafgesetzbuch)에는 이미 동물보호와 관련된 몇몇 범죄유형들이 규정된 바 있으나, 당시의 형벌규정(§ 360 Nr. 13)은 “공개적인 방식 또는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윤리적 관점에서의 동물보호라기보다는 인간이 느끼는 불

쾌감이나 역겨움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독일 연방 동물보호법(Bundestierschutzgesetz)(BGBI I S 1277)은 1972년 7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2002년 5월에는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 동물보호가 국가의 목적규정으로 삽입¹⁾됨으로써 동물보호법에 대한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2. 제정목적

현행 독일 동물보호법의 제정목적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은 반려생물체로서의 동물을 위해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의 책임으로서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1) 독일 기본법 제20a조: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자연적인 삶의 기초와 동물들을 헌법에 부합되는 질서의 범위 안에서 입법과 법률 및 법에 따른 집행력과 판결을 통해 보호할 책임을 진다.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률의 구성

독일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1조에서 법률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제2조부터 제13a조까지는 각종 행위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14조부터 제16i조까지 법률의 실행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제17조부터 제20a조까지는 각종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다.

II. 각종 행위 관련 규정의 개관

동물보호법 제2조부터 제13a조까지는 각종 행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을 위반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로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우선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동물사육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인데, 제2조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동물의 특성에 맞게 동물을 보호하고 먹이를 주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a조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규명령의 발령권한을 연방장관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발령된 법규명령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동물사육자의 일반적 금지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동물의 신체적 능력을 감소시키는 수술행위 등의 금

지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동물 간의 싸움을 금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제4조부터 제4b조까지는 동물의 살육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제4조는 척추동물을 살육하는 경우 마취나 그 밖에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4a조는 척추동물 외의 온혈동물인 경우에도 피가 외부로 유출되기 이전에 마취를 시키고 살육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4b조는 전 2개 조항의 규정들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법규명령의 발령권한을 연방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5조부터 제6a조까지는 동물의 수술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제5조는 척추동물의 수술에 있어 마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척추동물의 신체 일부분이나 전체를 절단하거나 장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6a조는 법률에 의해 허락되는 동물실험 등의 경우에 위 2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부터 제9a조까지는 동물실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제7조는 허용되는 동물실험의 목적과 원칙을 담고 있으며, 제8조는 척추동물에 대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a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척추동물실험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b조는 척추동물실험을 하기 위한 설비의 보유자에게 동

물보호담당관을 임명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동물실험을 담당하는 사람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a조는 동물실험에 대한 기록 작성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교육목적의 동물 수술 및 처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10a조는 원료 및 상품의 획득을 위한 동물 수술 및 처치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준용규정을 정하고 있다.

제11조부터 제11c조까지는 애완용이 아닌 다른 목적 - 동물실험용 - 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거래하는 것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선 제11조는 이러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거래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1a조는 같은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원산지와 거주지를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11b조는 유전자 조작과 같은 방식으로 동물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11c조는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척추동물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12조는 동물보호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동물의 해외반출, 국내반입, 거래 및 보유 등에 대한 일반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제13조와 제13a조는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3조는 척추동물을

포획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3a조는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필요한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한 법규명령 발령 권한을 연방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연방 동물보호법의 행위 관련 규정의 개관

제2절 [동물의 사육]	제2조 - 동물사육자의 일반적 의무 제2a조 - 제2조의 구체화를 위한 법규명령 발령권한규정 제3조 - 일반적 금지행위들
제3절 [동물의 살육]	제4조 - 척추동물의 살육 방법 제4a조 - 온혈동물의 살육 방법 제4b조 - 전 2개 조항의 구체화를 위한 법규명령 발령권한규정
제4절 [동물의 수술]	제5조 - 척추동물의 수술 방법 제6조 - 척추동물의 신체 절단 및 장기 적출의 금지 제6a조 - 동물실험 등에서의 예외규정
제5절 [동물실험]	제7조 - 동물실험의 목적과 원칙 제8조 - 척추동물실험의 허가 제8a조 - 허가를 요하지 않는 실험의 신고의무 제8b조 - 동물보호담당관의 임명 제9조 - 동물실험담당자의 자격요건 제9a조 - 동물실험의 기록 작성 및 보고
제6절 [교육목적의 동물 수술 및 처치]	제10조 - 교육목적의 동물 수술 및 처치의 일반적 원칙
제7절 [원료 및 상품의 획득 등을 위한 동물 수술 및 처치]	제10a조 - 원료 및 상품 획득 등을 위한 동물 수술 및 처치의 일반적 원칙
제8절 [동물의 사육 및 거래]	제11조 - 동물의 사육 및 거래의 허가 제11a조 - 동물의 원산지 및 거주지의 기록 작성 및 보관의무 제11b조 -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한 동물형태의 변형금지 제11c조 - 만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척추동물의 양도금지

제9절 [반출/반입 금지, 거래 금지, 보유 금지]	제12조 - 동물의 반출/반입금지, 거래금지, 보유금지 규정
제10절 [동물보호를 위한 기타규정]	제13조 - 척추동물의 포획, 위협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금지 제13a조 - 동물보호를 위한 기타 법규명령의 발령권한규정

III. 형벌 및 과태료 규정 등

동물보호법 제17조부터 제20a조까지는 형벌 및 과태료를 비롯한 각종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제17조는 형벌규정이며, 제18조는 과태료규정, 제18a조는 과태료부과를 위한 법규명령의 제정권한에 관한 규정이다. 제19조는 일종의 부가형으로서 동물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역시 일종의 부가형으로서 동물사육금지 또는 직업적인 동물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20a조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7조에 따른 형벌부과의 판결 이전에 동물사육금지 또는 직업적인 동물거래행위 등을 잠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벌규정

동물보호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7 조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척추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자 또는
2. 척추동물에게
 - a) 잔혹하게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 또는
 - b) 장시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극심한 고통 또는 괴로움을 가한 자

형벌규정인 제17조의 1호는 척추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구성요건 중 ‘합리적인 이유’라는 구성요건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어떠한 상황이 척추동물을 죽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려할 수밖에 없다.²⁾ 이 법률에서 말하는 동물을 죽이는 방법은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죽이는 것도 포함되며, 부작위를 통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³⁾ 동물을 죽인 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만 처벌되며,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고의로 동물을 죽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동 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2) Lorz/Metzger, Tierschutzgesetz-Kommentar, 6 Aufl., München 2008, § 17, Rn. 2.

3) Lorz/Metzger, a.a.O., § 17, Rn. 5 f.

않는다. 미수에 그쳤으나 동물이 크게 다친 경우는 제18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⁴⁾

또한 제17조의 2호에서는 ‘잔혹(Rohheit)’하게 ‘극심한(erheblich)’ ‘고통(Schmerzen)’이나 ‘괴로움(Leiden)’을 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요건들 역시 상당부분 명확하지 않은 요건이라는 지적이 있다.⁵⁾ 다만 독일 연방대법원은 잔혹함을 보통의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고려에 비추어볼 때 감정이 없는 냉혹한 심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⁶⁾

한편 제17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일종의 부가형으로서 제19조에 따른 동물몰수나 제20조에 따른 동물사육금지 또는 직업적인 동물거래행위 등이 금지될 수 있다.

2. 과태료규정 - 질서위반행위

동물보호법 제18조는 질서위반행위(Ordnungswidrigkeit)로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1)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질서위반행위로 벌한다.

1. 자신이 기르고, 돌보거나 또는 돌보아야 하는 척추동물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극심한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힌 자,

2. 제8a조 5항, 제11조 3항 2문 또는 제16a조 2문 1호, 3호 또는 4호의 규정에 따른 실행가능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자
 - a) 제2a조의 규정에 따라 또는
 - b) 제4b조, 제5조 4항, 제6조 4항, 제11a조 3항 1문, 제11b조 5항 2호, 제12조 2항, 제13조 2항 또는 3항, 제13a조, 제14조 2항, 제16조 5항 1문 또는 제16c조에 따라 발령된 법규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이 법규명령이 과태료 규정에 대한 특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4조 1항에 반하여 척추동물을 죽인 자,
6. 제4a조 1항에 반하여 온혈동물을 도살한 자,
7. 제5조 1항 1문에 반하여 마취 없이 수술하거나 또는 수의사 없이 수술한 자, 제5조 1항 2문에 반하여 마취를 한 자,
8. 제6조 1항 1문에 따른 금지를 위반하거나 또는 제6조 1항 3문에 반하여 수술한 자,
9. 제9조 3항 1문과 관련하여 제6조 1항 5문에 반하여 제9조 1항 1문 또는 3문, 또는 제2항 4호 또는 8호의 규정들의 준수에 애쓰지 않은 자,
- 9a. 제6조 1항 6문, 7문, 8문 또는 9문에 반하여 수술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자,
10. 제6조 2항에 반하여 탄성이 있는 고리를 사용한 자,
11. 제7조 4항 또는 5항 1문에 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자,
12. 제8조 1항에 따라 필요로 하는 허가 없이 척추동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자,
13. 제8조 4항 2문에 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자,
14. 제8a조 1항, 2항 또는 4항에 반하여 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자,



4) Lorz/Metzger, a.a.O., §17, Rn. 8 f.

5) Lorz/Metzger, a.a.O., § 17, Rn. 32.

6) BGH Beschluss vom 28.02.2007 = NStZ 2007, 405 zu § 225 StGB.

15. 제8a조 3항 2문에 반하여 실험계획의 횟수 또는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종류 또는 숫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자,
16. 제8b조 1항 1문에 반하여, 또한 제4조 3항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담당관을 선임하지 않은 자,
17. 제9조 3항 1문에 반하여 제9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 준수에 노력하지 않거나, 제9조 3항 2문에 반하여 실행가능한 부관의 이행에 노력하지 않은 자,
18. 제9a조에 반하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에 서명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
19. 제10조 3항에 반하여 제10조 1항 또는 2항의 규정 준수에 노력하지 않은 자,
20. 제11조 1항 1문에 따라 필요로 하는 허가없이 행위한 자 또는 그러한 허가과 결합된 실행가능한 부관을 위반한 자,
- 20a. 제11조 5항에 반하여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문적 고객의 신분증을 요구할 것을 보증하지 않은 자,
- 20b. 제11조 6항에 반하여 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자,
21. 제11a조 1항 1문에 반하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또는 제11a조 2항에 반하여 동물들에 기호를 붙이지 않거나 규정된 방식대로 기호를 붙이지 않거나 적시에 기호를 붙이지 않은 자,
- 21a. 제11a조 4항 1문에 따른 허가없이 척추동물을 수입한 자,
22. 제11b조 1항 또는 2항에 반하여 척추동물을 사육하거나 생명공학적이거나 유전자조작 방식을 통해 변형시킨 자,
23. 제11c조에 반하여 유아 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척추동물을 인도한 자,
24. (삭제)
25. 제13조 1항 1문에 반하여 기구 또는 물질을 사용한 자,
- 25a. 제16조 1a항 1문에 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자,

26. 제16조 2항에 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은 자 또는 제16조 3항 2문에 따른, 또한 제16조 5항 2문 3호에 따른 법규명령과 관련된 수인의무 또는 협력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27. (삭제).
- (2) 제1항 1호의 경우 외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힌 자도 질서위반행위로 별한다.
- (3)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도 질서위반행위로 별한다
 1. 유럽연합공동체의 법률행위들 내에서 직접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내용상 다음 각 목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a) 제1항 4호부터 9호, 11호, 12호, 17호, 22호 및 25호에 명시된 명령 또는 금지에 해당하며, 제18a조 1호에 따른 법규명령이 이러한 과태료 규정에 대한 특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제1항 9a호, 10호, 13호부터 16호, 18호, 19호, 20a호부터 21a호, 23호 및 25a호에 명시된 명령 또는 금지에 해당하며, 제18a조 2호에 따른 법규명령이 이러한 과태료 규정에 대한 특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2. 유럽연합공동체의 법률행위들 내에서 직접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내용상 제1항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a) 제3호 a목에 언급된 규정에 해당하며, 제18a조 1호에 따른 법규명령이 이러한 과태료 규정에 대한 특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제3호 b목에 언급된 규정들에 해당하며, 제18a조 2호에 따른 법규명령이 이러한 과태료 규정에 대한 특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4) 제1항 1호, 2호, 3호 a목, 4호부터 9호, 11호, 12호, 17호, 20호, 22호, 25호 및 제2항과 제3항 1호 a목과 2호 a목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5,000 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0 유로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규명령 발령에 대한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18a조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규명령 발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담고 있다.

제 18 a 조

연방장관은 유럽연합공동체의 법률행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상원의 동의없이 법규명령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질서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건들을 규정할 권한을 갖는다.

1. 제18조 3항 1호 a목 또는 제2호 a목 또는
2. 제18조 3항 1호 b목 또는 제2호 b목

4. 동물의 몰수 규정

동물보호법 제19조는 제17조에 따른 범죄나 제18조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일종의 부가형으로서 동물보호의 차원에서 범행자가 보유한 동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동물들을 몰수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2. 제18조 1항 1호, 2호, 3호, 4호, 8호, 9호, 12호, 17호, 19호, 21a호, 22호 및 23호의 경우, 단 제3호의 경우에는 이 질서위반행위가 제2a조, 제5조 4항, 제11b조 5항 2호 또는 제12조 2항 4호 내지는 5호에 따른 법규명령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그러하다.

(2) 그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도 동물들을 몰수할 수 있다

1. 제18조 3항 1호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질서위반행위가 유럽연합공동체의 법률행위들 내에서 직접적으로 통용되는 규정과 관련이 되며, 내용상으로 제18조 1항 4호, 8호, 9호, 12호, 17호, 19호, 21a호, 22호 및 23호에서 규정된 명령 또는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 3항 2호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질서위반행위가 유럽연합공동체의 법률행위들 내에서 직접적으로 통용되는 규정과 관련이 되며, 내용상으로 제2a조, 제5조 4항, 제11b조 5항 2호, 제12조 2항 4호 및 5호에 따른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5. 동물사육금지 및 직업적 거래행위 등의 금지 규정

동물보호법 제20조는 제17조에 따른 형벌을 부과 받았거나, 책임능력이 배제되어 형벌을 부과받지는 않았지만 제17조의 범행 구성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하거나 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20a조는 제20조에 따른 금지를 명령할 긴급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죄판결 이전에 잠정적으로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0 조

- (1) 제17조에 따른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자가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책임무능력이 입증되거나 배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에게 모든 종류의 또는 특정한 유형의 행위지속 내지는 거래 또는 그 밖의 동물 관련 직업적 중사행위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제17조에 따른 위법한 행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 (2) 이러한 금지는 판결의 기판력을 통해 유효하다. 범인이 구금된 기간은 이 금지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금지의 명령이 발령된 후에 범인이 제17조에 따른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금지를 폐지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그러하다.

(3) 제1항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20a 조

(1) 제20조에 따른 금지를 명령할 긴급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관은 피고인에게 결정의 형식으로 모든 종류의 또는 특정한 유형의 행위지속 내지는 거래, 또는 그 밖의 동물 관련 직업적 종사행위를 잠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잠정적인 금지는 그 사유가 사라지거나 법원이 판결에서 제20조에 따른 금지를 명하지 않는 경우에 폐지되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독일의 연방동물보호법의 운용현황 및 처벌수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의 연방동물보호법상의 처벌은 거의 대부분이 질서위반행위로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의 각종 행위규제 관련 조항에 대한 위반은 대부분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행위로 규율되고 있으며, 다만 범죄로 구성하여 형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17조의 구성요건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제17조의 범죄 구성요건 중 일부는 불명확하다

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검찰 실무상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범죄수사 및 기소 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⁷⁾ 또한 제17조에 따라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건수 역시 전체 범죄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독일의 총 기소건수 911,424건, 총 유죄판결건수 734,669건⁸⁾ 가운데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기소된 건수는 846건이며 유죄판결을 받은 건수는 596건이다.⁹⁾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59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44건이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552건이다.¹⁰⁾

그 밖의 처벌 상 특이한 점으로는 동물보호의 차원에서 제17조의 범죄행위 및 제18조의 질서위반행위 중 일부를 범한 사람이 보유한 동물을 몰수할 수 있다는 점(제19조), 그리고 제17조의 범죄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동물의 사육 및 직업적 거래행위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제20조)을 들 수 있다.

주 현 경

(독일주재 외국법제조사원)



7) Rau, Praktische Probleme der Staatsanwaltschaft bei der Verfolgung von Tierschutzstraftaten, in: NuR (2009) 31, 532.

8) Statistisches Bundesamt,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08, S. 16.

9) Statistisches Bundesamt,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08, S. 54, 86.

10) Statistisches Bundesamt, Strafverfolgung, Fachserie 10, Reihe 3, 2008, S. 116.